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26명, 해외유입 사례는 4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0,896명(해외유입 6,51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3,62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0,685건(확진자 6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4,307건, 신규 확진자는 총 372명이다.
 -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360명으로 총 70.865명(87.6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56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90명,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71명**(치명률 1.82%)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2.7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26	141	8	11	15	10	6	0	1	109	5	1	8	0	4	1	4	2
누계	74,3771)	24,346	2,766	8,260 ¹⁾	3,756	1,783	1,072	860	173	19,172	1,671	1,532	1,972	957	701	2,929	1,923	504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7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추정)유	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구분	합계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46	1	19	3	13	10	0	27	19	25	21
누계	6,519 ¹⁾	39	2,930 ¹⁾	1,121	2,135	271	23	2,812	3,707 ¹⁾	3,567 ¹⁾	2,952
구세	0,519	(0.6%)	(44.9%)	(17.2%)	(32.7%)	(4.2%)	(0.4%)	(43.1%)	(56.9%)	(54.7%)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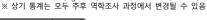
* 중국 :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키르기스스탄 2명, 인도 2명(1명), 미얀마 2명(1명), 러시아 4명(4명),

【**화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_	I I I II/#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2.6.(토) 0시 기준	70,505	8,555	197	1,464
2.7.(일) 0시 기준	70,865	8,560	190	1,471
변동	(+)360	(+)5	(-)7	(+)7

* 2월 6일 0시부터 2월 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地方主 子见 むなむ 사회

- □ 2월 7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2월 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26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54.7명), 수도권에서 **265명**(81.3%) 비수도권에서는 **61명** (18.7%)이 발생하였다.

(주간: 2.1일~2.7일, 단위: 명)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구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7일(0시 기준)	326	265	16	14	12	12	5	2
주간 일 평균	354.7	263.6	21.9	19.9	16.9	25.1	5.6	1.9
주간 총 확진자 수	2,483	1,845	153	139	118	176	39	13

○ 수도궈

(주간 : 2.1일~2.7일, 단위 : 명)

구분	2.1.	2.2.	2.3.	2.4.	2.5.	2.6.	2.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04	199	309	337	257	274	265	263.6	1,845
서울	104	121	184	166	122	142	141	140.0	980
인천	11	8	18	43	25	24	15	20.6	144
경기	89	70	107	128	110	108	109	103.0	721

- (서울 서대문구 체육시설 관련) 2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 (구분) 이용자 9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지인 4명, 가족 1명, 기타 1명
- (서울 도봉구 교회 관련) 1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 (**구분**) 교인 3명(지표포함), 가족 6명, 기타 2명











- (서울 광진구 음식점 관련) 2월 5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9명*이다.
- * (구분) 방문자 52명(지표포함, +9), 종사자 6명(+1), 가족 7명(+3), 지인 4명
- (경기 안산시 인테리어업 관련) 격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 * (구분) 종사자 17명(지표포함, +7), 가족 11명(+7), 기타 2명 (+2)
- (경기 평택시 제조업 관련) 2월 3일 이후 격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3명*이다.
- * (구분) 종사자 43명(지표포함, +1), 가족 및 지인 7명(+3), 기타 3명
- (수도권 도매업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1명이 추가 확진 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도매업 관련	13	종사자 8명(지표포함) 가족 및 지인 5명
② 강원도 횡성 병원 관련	6	환자 2명, 간병인 1명, 지인 및 가족 3명
③ 안양시 사우나 관련	15(+11)	사우나 이용자 15명(+11)

○ 충청권

(주가 · 21일~27일 단위 · 명)

구분	2.1.	2.2.	2.3.	2.4.	2.5.	2.6.	2.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8	23	51	19	13	23	16	21.9	153
대전	-	-	7	2	-	8	6	3.3	23
세종	-	-	1	-	-	-	1	0.3	2
충북	5	18	8	4	2	2	1	5.7	40
충남	3	5	35	13	11	13	8	12.6	88









心沙 उर्ध ध्या भेष

- (대전 중구 주민센터 관련) 2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 (**구분**) 종사자 4명(지표포함), 가족 4명, 기타 3명
- (충남 청양군 마을이장 관련) 2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 (구분) 가족 4명(지표포함), 지인 3명, 동료 1명
- (충북 음성군 축산물업체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 **(구분)** 종사자 15명(지표포함, +1), 가족 4명(+1)

○ 호남권

(주간: 2.1일~2.7일, 단위: 명)

구분	2.1.	2.2.	2.3.	2.4.	2.5.	2.6.	2.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33	27	22	15	14	14	14	19.9	139
광주	32	23	6	12	14	12	10	15.6	109
전북	1	2	10	1	-	1	-	2.1	15
전남	-	2	6	2	-	1	4	2.1	15

- (광주 서구 교회2 관련) 1월 3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 (구분) 교인 5명(지표포함), 기타 2명
- (광주 북구 교회2/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2월 5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7명이다.









心地到此处社社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북구 교회2	11	교인 6명(지표포함), 기타 5명
② 북구 에이스 TCS*	20(+1)	IM 선교회 에이스 TCS 15명, 기타 5명(+1)
③ 어린이집 관련	20	원아 3명, 교직원 7명, 기타 10명
④ 광산구 광주 TCS*	133(+3)	학생 81명, 교직원 24명, 교인 7명, 기타 21명(+3)
⑤ 캠프 관련	33	방문자 11명, 추가전파 22명(+3) **(지역) 서울 4명, 경기 19명(+3), 울산 3명, 경남 7명

- * TCS(Two Commandment School) : 미국 초중고 입시과정(기숙형)
- ** 경기 안성 TCS 관련 시례 중 역학조사 과정에서 캠프 참석자에 의한 전파 확인되어 재분류
- (광주 북구 성인게임랜드1 관련) 2월 2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성인게임랜드 관련	17	종사자 2명(지표포함), 방문자 6명, 가족 7명, 기타 2명
② 영어학원 관련	14(+4)	학생 10명(+4), 가족 4명

* **(추정감염경로)** 성인게임랜드 종사자 → 가족 전파 → 영어학원 전파

○ 경북권

(주간 : 2.1일~2.7일, 단위 : 명)

구분	2.1.	2.2.	2.3.	2.4.	2.5.	2.6.	2.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13	20	19	13	20	211	12	16.9	118
대구	9	10	9	7	14	171	11	11.0	77
경북	4	10	10	6	6	4	1	5.9	41

- (대구 북구 일가족 관련) 2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 **(구분)** 가족 4명(지표포함), 지인 1명, 직장관련 3명
- (경북 경산시 사업장2 관련) 2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 * (구분) 직원 3명(지표포함), 가족 2명









地方之子见 心对社 사회

○ 경남권

(주간: 2.1일~2.7일, 단위: 명)

구분	2.1.	2.2.	2.3.	2.4.	2.5.	2.6.	2.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19	19	26	35	39	26	12	25.1	176
부산	15	10	18	26	33	14	8	17.7	124
울산	-	-	-	2	-	2	-	0.6	4
경남	4	9	8	7	6	10	4	6.9	48

- (부산 수영구 요양시설 관련) 1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 (구분) 종사자 4명(지표포함), 환자 3명
- (부산 해운대구 요양시설 관련) 2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환자 3명
- (부산 중구 재활병원 관련) 2월 5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 * (구분) 종사자 5명, 환자 7명(+2), 간병인 3명(+2), 가족 4명(+1), 기타 4명(지표포함)

○ 제주권

(주간 : 2.1일~2.7일, 단위 : 명)

구분	2.1.	2.2.	2.3.	2.4.	2.5.	2.6.	2.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제주권	-	-	1	2	2	6	2	1.9	13

- (제주 제주시 일가족3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 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 **(구분)** 지표가족 6명(지표포함), 기타 3명(+1)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यहार उप ध्यार भंग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5.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 6. 설 연휴 방역수칙 포스터
- 7. 수도권·수도권 외 목욕장업 방역지침
- 8. 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 9.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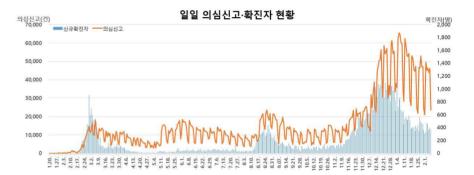
불인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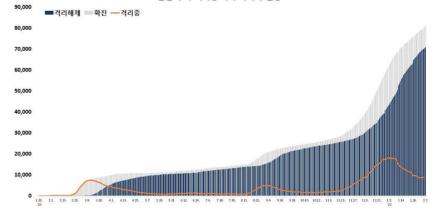
① 일일 확진자 현황 (2.7. 0시 기준, 80,896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결과 양성 구 분 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확진자 2.6.(토) 0시 기준 5,893,353 80.524 70.505 8.555 1,464 97.677 5,715,152 2.7.(일) 0시 기준 5.916.975 80.896 8.560 1.471 90.751 5.745.328 70.865 +30,176 +23.622 +372 +360 +5 +7 -6.926

- * 2월 6일 0시부터 2월 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지역별 확진자 현황** (2.7. 0시 기준, 80,89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	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 ¬	국내발생	해외유입	국단시구세	(70)	발생률 [*]					
서울	141	3	25,167	(31.11)	258.56					
부산	8	1	2,885	(3.57)	84.56					
대구	11	1	8,390	(10.37)	344.35					
인천	15	2	3,965	(4.90)	134.13					
광주	10	0	1,893	(2.34)	129.95					
대전	6	0	1,121	(1.39)	76.04					
울산	0	1	944	(1.17)	82.30					
세종	1	0	198	(0.24)	57.84					
경기	109	4	20,563	(25.42)	155.19					
강원	5	1	1,736	(2.15)	112.69					
충북	1	0	1,617	(2.00)	101.10					
충남	8	6	2,114	(2.61)	99.60					
전북	0	0	1,059	(1.31)	58.27					
전남	4	0	766	(0.95)	41.08					
경북	1	0	3,065	(3.79)	115.12					
경남	4	0	2,064	(2.55)	61.40					
제주	2	0	537	(0.66)	80.06					

27

46

2,812 (3.48)

156.03

80,896 (100)

-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0

326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7 8	ᄾᄾᆡ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구 분	합 계	울	산	7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8,560	3,737	339	124	334	374	62	17	7	1,985	161	135	176	60	75	208	161	19	586
격리해제	70,865	21,092	2,450	8,056	3,580	1,500	1,045	890	190	18,136	1,542	1,425	1,905	949	684	2,787	1,893	518	2,223
사망	1,471	338	96	210	51	19	14	37	1	442	33	57	33	50	7	70	10	0	3
합 계	80,896	25,167	2,885	8,390	3,965	1,893	1,121	944	198	20,563	1,736	1,617	2,114	1,059	766	3,065	2,064	537	2,812

* 2월 6일 0시부터 2월 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검혁

총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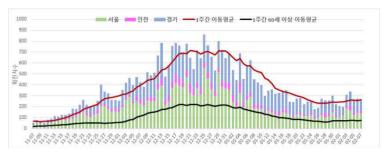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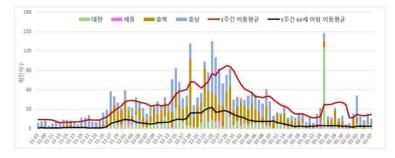
心就到此时就此时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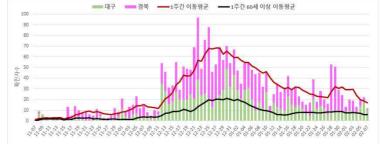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③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2.7. 0시 기준, 80,896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인구10만명당 확진자누계 (%) 구 분 금일 신규 (%) 발생률* 계 372 (100) 80.896 (100) 156.03 남성 215 (57.80) 39,772 (49.16) 153.78 성별 여성 157 (42.20) 41,124 (50.84) 158.26 80세 이상 4,035 (4.99) 212.45 11 (2.96) 70-79 6,194 (7.66) 171.72 26 (6.99) 60-69 66 (17.74) 12,708 (15.71) 200.31 79 (21.24) 15,165 (18.75) 50-59 174.97 여령 11,618 (14.36) 40-49 44 (11.83) 138.49 30-39 47 (12.63) 10,331 (12.77) 146.64 51 (13.71) 12,290 (15.19) 20-29 180.57

5,417 (6.70)

3,138 (3.88)

27 (7.26)

21 (5.65)

4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2.7. 0시 기준)

10-19

0-9

		< 성	별·연령별 사	망현황 >		
7	·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00)	1,471	(100)	1.82
 성별	남성	6	(85.71)	730	(49.63)	1.84
~ Z	여성	1	(14.29)	741	(50.37)	1.80
	80세 이상	6	(85.71)	836	(56.83)	20.72
	70-79	1	(14.29)	399	(27.12)	6.44
	60-69	0	(0.00)	170	(11.56)	1.34
	50-59	0	(0.00)	48	(3.26)	0.32
연령	40-49	0	(0.00)	12	(0.82)	0.10
	30-39	0	(0.00)	6	(0.41)	0.06
	20-29	0	(0.00)	0	(0.00)	0.00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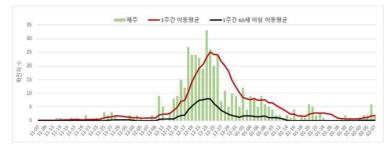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心心 子见 心过让 사회



10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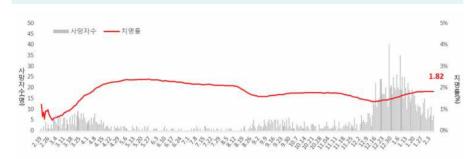
75.64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25. 1.26. 1.27. 1.28. 1.29. 1.30. 1.31. 2.1. 2.2. 2.3. 2.4. 2.5. 2.6. 2.7.

계 275 270 270 251 239 231 229 225 224 220 211 200 197 190

 구분	위중증	(%)	
<u></u>	190	(100.0)	
80세 이상	43	(21.8)	
70-79세	83	(42.1)	
60-69세	52	(26.4)	
50-59세	11	(5.6)	
40-49세	4	(2.0)	
30-39세	4	(2.0)	
20-29세	0	(0.0)	
10-19세	0	(0.0)	
0-9세	0	(0.0)	

^{*} **위증증**: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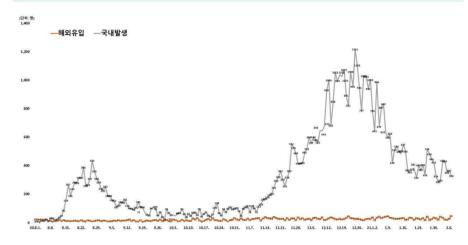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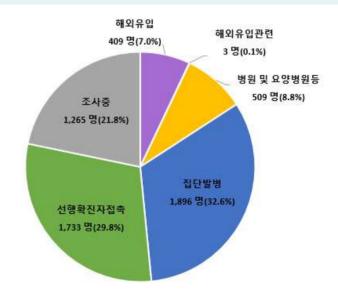


5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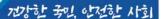
< 최근 2주간 ('21.1.25일 0시~'21.2.7일 0시까지 신고된 5,815명) 감염경로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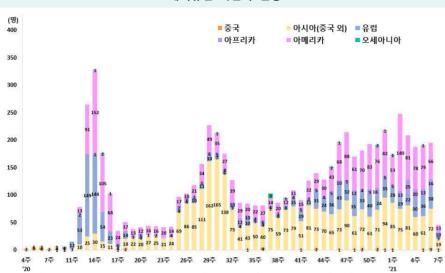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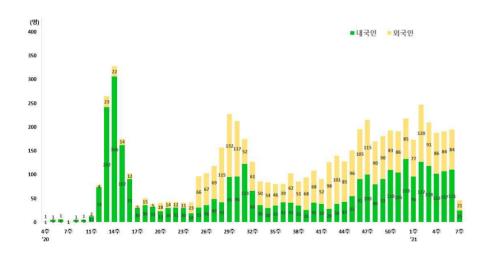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지역 변경(21.2.6. 0시 기준, 대구 국내발생 -1, 해외유입(아시아(중국 외) +1, 지역사회 +1, 내국인 +1)

- 15 -









心沙社 到, 处对社 从到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l			화지화지	나 (단위: 5	면 %)				
TIM					에 관련 생 관련	0, /0)				조이 되다 바세 내레(명)
지역	누계	해외 유입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	해외유입 관련	기타 [*]	조사중	신규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서울	25,167	821	9,493	8	9,397	88	8,194	6,659	144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부산	2,885	119	1,784	12	1,716	56	596	386	9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대구	8,390	130	6,181	4,512	1,662	7	1,148	931	12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인천	3,965	209	1,877	2	1,865	10	1,218	661	17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광주	1,893	110	1,494	9	1,479	6	159	130	10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대전	1,121	49	602	2	599	1	303	167	6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울산	944	84	672	16	652	4	113	75	1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세종	198	25	89	1	87	1	45	39	1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경기	20,563	1,391	7,945	29	7,838	78	6,913	4,314	113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강원	1,736	65	982	17	964	1	450	239	6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한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충북	1,617	85	862	6	849	7	424	246	1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충남	2,114	142	1,044	0	1,043	1	559	369	14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8명)
 전북	1,059	102	728	1	726	1	131	98	0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전남	766	65	534	1	523	10	90	77	4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26명)
경북	3,065	136	2,150	565	1,584	1	467	312	1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106명)
 경남	2,064	141	1,293	33	1,228	32	357	273	4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01명) • 충북과(단당(2017) 명원 관련(472명)
	,		,						•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1명)
제주 	537	33	343	0	342	1	90	71	2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30명)
검역	2,812	2,812	0	0	0	0	0	0	27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22명)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합계	80,896	6,519	38,073	5,214	32,554	305	21,257	15,047	272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4명)
압세	(%)	(8.1)	(47.1)	(6.4)	(40.2)	(0.4)	(26.3)	(18.6)	372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1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6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2.7. 0시 기준)

				익명검사(건)			
구분	임시선별 검사소 수 (개소) ¹⁾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 ²⁾	확진자(명)
 신규	0	20,685	20,656	0	29	0	67
서울	0	9,852	9,830	0	22	0	36
경기	0	9,556	9,550	0	6	0	28
인천	0	1,277	1,276	0	1	0	3
누계	131	1,619,420	1,598,521	4,235	16,616	48 ³⁾	4,621
서울	53	757,001	749,557	1,485	5,939	20	2,410
경기	70	732,917	719,728	2,719	10,443	27	1,879
 인천	8	129,502	129,236	31	234	1	332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7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1~2.7)

구 분	2.1.	2.2.	2.3.	2.4.	2.5.	2.6.	2.7.	주간누계	총 누계
계	33,651	81,852	73,843	74,427	72,452	78,581	44,307	459,113	7,536,395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 ¹⁾	21,024	49,571	45,301	46,381	44,083	46,175	23,622	276,157	5,916,975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건) ²⁾	12,627	32,281	28,542	28,046	28,369	32,406	20,685	182,956	1,619,420
신규 확진자 수(명)	305	336	467	451	370	393	372	2,694	80,896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명) ³⁾	37	36	78	85	56	56	67	415	4,621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地方主 子见 心对社 사회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73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7 4	누적 팀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구분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발생자 수*
미국	26,418,016	452,186	124,866	5,182	1.71	7,981.27
인도	10,814,304	154,918	11,713	95	1.43	783.65
브라질	9,396,293	228,795	56,873	1,232	2.43	4,419.71
러시아	3,951,233	76,229	16,627	497	1.93	2,708.18
영국	3,911,577	111,264	19,114	1,014	2.84	5,760.79
프랑스	3,241,919	78,198	20,741	650	2.41	4,964.65
스페인†	2,913,425	60,802	-	-	2.09	6,225.27
이탈리아	2,611,659	90,618	14,213	377	3.47	4,316.79
터키	2,516,889	26,577	7,901	110	1.06	2,985.63
독일	2,275,394	61,286	10,485	689	2.69	2,715.27
콜롬비아	2,135,412	55,131	9,790	254	2.58	4,195.31
아르헨티나	1,961,635	48,700	8,891	161	2.48	4,339.90
멕시코	1,899,820	162,922	13,575	1,682	8.58	1,473.87
폴란드	1,545,530	38,994	5,966	282	2.52	4,088.70
남아프리카공화국	1,470,516	45,902	3,749	297	3.12	2,479.79
이란	1,452,387	58,336	7,061	80	4.02	1,729.03
우크라이나	1,241,479	23,516	4,310	129	1.89	2,840.91
페루	1,165,052	41,753	6,715	215	3.58	3,530.46
인도네시아	1,134,854	31,202	11,749	201	2.75	414.94
체코	1,030,112	17,129	8,635	153	1.66	9,627.21
네덜란드	997,751	14,294	4,365	60	1.43	5,834.80
캐나다	793,734	20,513	4,083	158	2.58	2,105.40
포르투갈	755,774	13,740	6,916	258	1.82	7,409.55
칠레	744,019	18,808	3,782	77	2.53	3,895.39
루마니아	740,732	18,748	2,580	73	2.53	3,857.98
방글라데시	537,465	8,182	435	7	1.52	326.33
필리핀	533,587	11,058	1,888	61	2.07	486.85
일본	401,355	6,243	2,307	108	1.56	317.28
형가리	375,125	13,026	1,561	96	3.47	3,867.27
네팔	271,707	2,035	105	2	0.75	933.70
미얀마	141,304	3,168	200	5	2.24	259.75
중국	89,692	4,636	11	0	5.17	6.23
키르기스스탄	84,992	1,423	72	3	1.67	5.91
우즈베키스탄	79,045	621	56	0	0.79	62.49
태국	23,134	79	490	0	0.34	33.14
베트남	1,976	35	19	0	1.77	2.03
대한민국	80,896	1,471	372	7	1.82	156.07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t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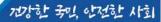


²⁾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³⁾ 양성 32건, 음성 16건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 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³⁾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		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mark>홀덤펍</mark>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u>▶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u>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u>▶ 시설 면적 16m'당 1명 인원 제한</u>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心計 到, 心对让 从到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파티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사설 포함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샤워실 운영 시 이용자간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방광장 눈쌀때장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성소 1㎡) 거리두기 준수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m'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心沙社 到, 心对社 사회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u>▶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u>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心沙社 到, 心心社 사회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mark>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mark>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직장근무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 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 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 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딩	덬펍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섭취 금지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心沙社 到, 心心让 从到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사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방상장 눈발(장)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mark>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mark>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크지크대워미드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 마스크 착용				
(300m² 이상)	▶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u>▶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u>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숙박시설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 ' '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u>안내문 게시</u>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70812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1-1111012	운영, 지역 위험도 능에 따라 필요 시 휴관				
마스크 착용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등교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으ㅠ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 회식 자제				
직장근무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 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미가기어 드트 이익이 1/2 이사/피스이의 페이치 이의 기즈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यारो उप ध्यो भंग

붙임 5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 대책 개요

- 기간 : 2. 1.(월) ~ 2. 14.(일) * 설 연휴 : 2.11.(목)~2.14.(일)
- **방향** :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

□ 주요 내용

-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가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검토,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및 실내취식 금지
-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제공
- 명절 전후 **봉안시설** 총 5주(1월 4주~2월 4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관리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면회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 통화를 이용한 면회 시행 권고
- (방역 및 의료대응)
 -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차질없이 운영,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 지속 실시 등







설 연휴 방역수칙 포스터







외출 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병, 고혈압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의 경우 외부인 방문 자제



최소 1일 3회(1회당 10분)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설 연휴에는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해주세요!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문의하세요









수도권·수도권 외 목욕장업 방역지침

□ 수도권 목욕장업 관련 방역지침

관리자 운영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주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기급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m²당 1명)
 -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

이용자 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 마스크 착용
-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m²당 1명)
- ▶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이용 금지

□ 수도권 외 목욕장업 관련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호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m'당 1명)
-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이용자 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 마스크 착용
-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 운영자 중사자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 11개 시·도 40개 시설 중 5개 시·도 6개 시설에서 401명(+4) 확진

시·도	확진자 발생 시설명		확진자	비고
6개소		401 (+4)		
광주	광주 CAS/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학생 및 교직원 관련	133 (+2)	
		예수복제 캠프 관련 (1.18.~1.20.)	33	울산 한다연구소 3명 양산 베들레헴 TCS 7명 서울 방문자 관련 4명 경기 방문자 관련 19명 포함 * 경기 1명을 서울로 재분류
	광주 에이스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51 (+1)	북구교회 11명, 어린이집 20명 관련 사례로 포함
대전	IM 선교회 본부 (IEM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MTS 과정)		182 (+1)	IEM 142명(+1) / MTS 40명 (홍천에서 확진된 39명 포함)
울산	한다연구소		(3)	광주 TCS 예수복제 캠프에 포함
경기	안성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2	예수복제 캠프 방문자 및 추가전파자 분류 변경
경남	양산 베들레헴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7)	광주 TCS 예수복제 캠프에 포함

^{*} 시·도별 관련 시설현황(총 40개소) : 서울(4), 부산(2), 대구(1), 인천(2), 광주(5), 대전(2), 울산(1), 경기(11), 강원(1), 충남(1), 전남(3), 경북(4), 경남(3)

[※]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心沙社 到 心对社 사회

붙임 9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기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地对社 圣则 此对社 사회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 …홋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 궈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 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처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화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 다.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가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 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담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 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 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의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정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